이 자료는 여성부지원 성매매예방 추진관련
여성발전기금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중구 정동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전화 02)2273-9535 / 팩스 02)2273-9539
http://www.women21.or.kr / E-mail : kwau@women21.or.kr

인권정보자료실 Mc1.19

인권정보자료실
Mc1.19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하는가?

- 성매매! 바로 보고 제대로 해결하자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성매매는 남성들의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필요악' 이다 NO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위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을 인정하는 남녀차별과 가부장사회의 유산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2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로 타락을 선택한 여성들이다 NO

주부 성매매, 여대생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중 자발적 또는 적극적으로 호객행위에 나서는 여성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비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자. 대부분의 여성들은 쾌락이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기보다는 빈곤, 차별, 학대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직업소개소를 통해 인신매매 되거나 거짓 광고에 속아서 알선범죄 조직에 의해 착취, 구타, 강간, 감금, 인신매매 등을 당하는 사회적 폭력에 희생당하는 사회적 약자이다.

3 성매매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NO

성매매의 구조는 성을 파는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기보다는 온갖 명목의 비용과 벌금 등으로 인해 빚과 병든 몸만을 남기는 범죄의 온상이다.

4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다 NO

유엔과 각종 국제협약에 의거하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을 성매매시키는 행위는 처벌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는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誤解 & 眞實

5 성매매 여성들이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NO

만일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면,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국가에서 성매매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결과는 이와 반대이다. 성을 사고 파는 일이 일상화된 한국의 경우, 성폭력 발생율이 세계 2위인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돈 · 힘 · 협박 등을 통해 여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6 특정지역에 성매매를 허용한다면 성매매는 줄어든다 NO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 채, 특정지역에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성매매를 국가가 용인하는 결과가 되며,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허용되지 않은 성매매가 더 많이 생겨나는 부작용만 낳게 된다.

7 성매매, 인신매매는 근절할 수 없다 NO

성매매, 인신매매는 마약거래, 무기거래와 함께 국제적 조직범죄로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한국의 법과 제도는 성매매, 인신매매의 처벌에 있어 관대하여 법 집행이 미약한 현실이다. 따라서 성매매, 인신매매는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절하지 않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본 성매매 실태

Q 언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나?
A 13세 ~ 18세

Q 성매매를 시작하게된 경로는?
A 가출 이후 숙식할 곳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직업소개소, 모집광고, 친구소개, 납치와 인신매매, 카드 빚 때문에 ...

Q 성매매를 시작하기 전 성매매 실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나?
A 전혀 몰랐다. 예를 들어, 내가 서비스해야 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제대로 몰랐다.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을 줄 알았다. 성매매로 인해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다 ...

Q 경험한 성매매 유형은?
A 다방, 유흥주점, 기지촌, 룸싸롱, 까페, 숙박업소, 유리방, 보도방, 단란주점, 맥주 · 양주집, 상업지역 ...

Q 하루 노동시간과 평균 상대한 남성의 숫자는?
A 24시간 대기(밥 먹다가도, 또는 자다가도 손님이 오면 상대해야 함)
적게는 3명에서 20명까지(때로는 포주로부터 강간도 당함)
※일제하에서 '정신대' 할머니들도 하루에 20여명의 일본병사를 상대해야 했다

Q 성매매 업소를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A 선불금, 차용증서, 맞보증, 감금, 감시, 신고해도 나만 처벌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봐 ...

Q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겪는 증후군(직업병)?
A 알콜중독, 섭식증, 경계선 장애, 대인기피증, 환청, 환각, 임질, 매독, 임신중절 후유증, 자궁질환, 에이즈 ...

성매매 10년에 남은건 빚과 병든몸..

성매매 확산의 주범은 누구?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수요 - 공급 - 법"의 삼각관계

수요(성산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알선범죄)

-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포탈과 여성착취를 통해 막대한 불법수익을 올리고 있는 성 산업의 확산(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우리나라는 유흥산업이 중심이 된 서비스 산업이 기형적으로 팽창하여 2001년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54.1%에 달하였다)
- '남자는 성매매를 해도 괜찮다'는 남성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다'는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
- 성적 서비스를 최고의 대접으로 여기는 음주문화와 접대문화

공급(여성과 아동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사회)

- 경제적 측면 : 빈곤, 실업, 고용기회의 부족
- 사회적 측면 : 성폭력의 경험, 가정폭력과 가정해체로 인한 가출, 교육기회의 부족
- 의식적 측면 : 성매매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성매매 실상에 대한 오해

법(성매매 처벌에 대한 불충분하고 미흡한 법)

-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정부, 경찰, 검찰의 잘못
- 성매매 알선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실현하는 성매매방지법의 부재
-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공무원과 알선조직과의 유착비리

성매매에 관한 각국의 입법 정책

1. 금지주의

(1) 특　　징 : 모든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성을 파는 행위, 사는 행위, 그리고 이들을 착취하는 중간매개자인 알선행위 등을 처벌하는 정책

(2) 채택한 국가 : 한국, 미국,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3) 문 제 점 :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에 의한 억압과 착취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법적 지원과 정부의 보호가 어렵다.

2. 규제주의

(1) 특　　징 : 성매매를 일정한 조건에서 합법화시켜, 정부가 포주를 대신해서 성매매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정책. 정부가 공인한 매춘지역 안에서만 허가를 받은 성매매 여성 성만이 영업을 하도록 하고,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허가 지역 이외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2) 채택한 국가 :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파나마, 르완다

(3) 문 제 점 : 국가가 포주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정기적인 성병검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포주들의 '대부' 역할을 하게 된다.

※공창제도가 성매매를 축소하기는커녕, 허가지역 이외에서의 불법 성매매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이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2000년 10월 이후, 일정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델란드는 현재 불법성매매가 증가되는 부작용과 함께, 경찰서, 세무서, 보건소 등에서 날아드는 각종 서류와 규제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3. 비범죄주의(폐지주의)

(1) 특　　징 :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정책. 여성에 대한 강제 성매매와 자발적인 성매매는 분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강제 성매매는 여성인권침해로 보아 보호하고 자발적인 성매매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따라서 포주, 알선, 인신매매 행위 및 성매매 광고행위와 호객행위는 여전히 금지한다.

(2) 채택한 국가 : 프랑스

(3) 문 제 점 : 성매매는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자 착취라는 점을 간과한 채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3대 방향

우리의 대안

1.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으로서, 성매매를 근절 또는 최소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성매매 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이자 알선범죄로 인한 착취의 피해자로 규정하여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3. 성매매, 인신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매매,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유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49년)」에서 제시된 성매매 범죄의 정의와 국가의 책임

- 합의여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소개하거나 유인 또는 유괴하는 자,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 성매매 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제공하거나 제공에 관여한 자
- 타인을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여,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2000년)」에서 제시된 인신매매 범죄의 정의와 국가의 책임

(1) 제3조 (용어의 사용)

-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 납치 · 사기 · 기만,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접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착취는 타인의 매춘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종속 또는 장기의 절제를 포함한다.
- 위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위에 규정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
-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는 이러한 행위가 위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2) 제5조(범죄화)

- 각 국은 제3조에 규정된 행위가 고의로 행해진 경우, 자국의 국내법 상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1. 1961년 5.16 쿠테타 이후 소위 '사회정화'를 위해, 성을 파는 여성을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을 찍어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40년간 바뀌지 않은 구시대의 '성 차별적 법'이다.

2. 법의 집행과정에서 중간착취자와 남성들은 처벌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성매매 여성들만 범죄자로 처벌되고, 인신매매, 감금, 착취, 폭행 등 성매매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는 외면하는 '반 인권적인 법'이다.

3.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나 손님들로부터 당하는 착취와 인권침해 실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범죄자로 고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인권침해와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이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이다.

4. 성매매 현장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여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차용증, 빚 보증각서, 신체포기 각서 등 불법적인 채무를 무효로 하는 법 조항(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경찰, 검찰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 '집행되지 않는 법'이다.

5.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공무원들의 법 집행 의무를 강제하지 않아서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비율이 극히 낮은 '실효성 없는 법'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원칙 유지

가. 법률 명칭 및 개념의 확대

-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정함
- 선도보호조치의 폐지에 따라 윤방법상의 요보호자 개념을 삭제하였음
- 성매매행위는 현행법상의 성교행위에서 나아가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나.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행위를 한 자로 법률상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범위를 최대화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되도록 함.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에 형사처벌 면제 및 상담소나 복지시설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여 탈 성매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검사는 재범 위험성이 적을 경우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중간알선고리 근절

가. 처벌강화

- 다양한 유입경로 및 형태에 대한 성매매 범죄를 상세히 규정하여 처벌 강화
-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강요, 광고, 모집, 유인, 권유, 장소제공 등을 각각 규정하여 처벌 강화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중간매개자는 중형으로 처벌하며, 형량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음

나. 몰수·추징제도의 신설

-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하여 중간매개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물건 뿐 아니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및 보상금 실시

-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부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 따라서 불법수익 몰수 금액중 3%이상 15%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이윤동기 부여
- 성매매여성 및 성산업 종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자수자 및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함

라.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현행법 20조를 대폭 보완하여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우변제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관련된 일체의 채권 및 약정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함
- 성매매된 여성이 감금상태로부터 도피할 때 업주가 이를 선불금 사기 등으로 처벌받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법률의 처벌규정 면제

마. 성매매 행위의 장소 등의 강제 폐쇄

- 불법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하도록 강제하여 재량의 여지 없앰

3)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보호

가. '성매매된 자'의 개념 규정 및 비범죄화

- 청소년, 대통령령에서 정한 외국인 및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에 포함
-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강요행위, 심각한 상해, 협박, 위계, 채무관계, 마약사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강요에 의한 성매매의 범주를 확대

나. 성매매여성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보호

- 수사과정에서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자신의 법률상 권한 및 지위를 확보하여 해당 수사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의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함

다. 선도보호처분의 폐지와 보호처분 제도 신설

- 성을 사고 파는 자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 재판시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유연한 보호처분 통해 사회복귀 유도

라.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체계 확립

- 기존의 '선도보호'를 폐지하고 강제적인 시설 입소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지원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시설 이용시 한시적인 일시보호 제공 의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부여
- 각종 급부 및 기술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과 무료숙식 서비스로 시설 이용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시설의 기능 전환

마. 불법행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 불법범죄에 대한 수사를 활성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지원시설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고지함을 의무화

- 지원시설에의 인도 의무화로 경찰 조사 후 다시 알선 등 업주에게 끌려가는 일 없도록 함

4)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보호처분 실시
- 보호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 미국의 John school(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결과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남성들의 재범율이 2%에 불과하여 교육의 효과 입증

5) 외국인 성매매된 자의 특별 보호 및 국제적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

- 2000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따라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하여 각국 정부의 법률적 조치 규정
- 성매매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출국을 명할 수 없고, 통역자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고, 체류기간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복지서비스 제공
- 법원은 직권으로 성매매된 자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제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여성부 등 관련기관은 범죄 수사 및 피해자지원활동 등 수행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행위 및 그 알선 등 행위의 방지와 성매매행위자의 선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함

성매매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

Q 윤락과 성매매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A 타락한 여성의 의미를 지닌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가치 중립적 용어 사용

Q '성매매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는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지칭

Q '성매매 알선 등 행위'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 (1) 성매매 행위를 알선 · 권유 ·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2) 성매매 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4)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Q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성매매된 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A (1) 성적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으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3) 마약에 중독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4) 외국인 여성 중 여권 등의 압류 또는 불법 체류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5) 청소년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6) 장애인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Q '성적 인신매매' 범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성을 파는 행위,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형법 제245조)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람을 모집, 운반, 은닉, 인도 또는 인수 및 전매하는 일체의 행위(국가간의 이동을 포함)를 말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031)233-8663
경남여성단체연합	055)266-372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062)225-6078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053)421-6758
부산여성단체연합	051)852-6647
전북여성단체연합	063)287-3459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055)282-9603
기독여민회	02)2265-7957
대구여성회	053)421-6758
대전여민회	042)257-3534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13-2475
부산여성사회교육원	051)802-6083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02)747-2442
새움터	031)867-4655
수원여성회	031)241-7530
안양여성회	031)458-3050
여성사회교육원	02)2278-7705
울산여성회	052)266-715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2)529-6349
제주여민회	064)756-7261
충북여성민우회	043)252-812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2264-8649
포항여성회	054)275-7436
한국보육교사회	02)2275-8505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02)365-8763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한국여성연구소	02)2273-6206
한국여신학자협의회	02)2275-775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2269-296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935
함께하는주부모임	053)425-770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708-5894